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83

제출년월일 : 2010. 8.1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1995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사 대상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 조 제목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법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법문장 표기와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하한 기준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함. (안 제2조제1항).

나. 조 제목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함. (안 제8조제1항).

다. 상위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9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7.10.~ 7.29.(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현행조례(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중 "10억 원 이상"을 "20억 원 이상"으로 하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2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3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3항 중 "제2조의 규정에"를 "제2조 및 제7조에"로 하며, 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심사의뢰받은"을 "심사의뢰를 받은"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제5호를 제3호, 제4호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 관하여"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안산시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41조, 제44조 및----------제10조에 따라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삭 제>----------.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10억 원 이상---------- 2. (생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생략) 1. ~ 2. (생략) 3.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3조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대한----------. 1. ----20억 원 이상----------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②(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3조(투자심사기준) -------따른----------.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해당---------- ----------해당---- ---------- ---------- ---------- ----------.

현 행	개 정 안
②(생략) ③사업주관 실·과·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생략) 1. ~ 3. (생략) 4.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②(현행과 같음) ③----------제2조 및 제7조에----------. ④(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업무담당과장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과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②----------심사의뢰를 받은---------- ----------해당----------. ③ 제1항에 따른----------.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7조(재심사) ----------해당----------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투자심사결과 도 또는 중앙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당해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결과를 매년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양여금 지원대상의 선정 4. ~ 5. (생략)	제9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 ---------- ---------- ----------제6조에 따른----------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 제4호및 제5호와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삭 제>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83

제안년월일 : 2010. 9. 2.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하한 기준액을 20억 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하한 기준액을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조제1호)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20억 원 이상”을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2. ~ 3.(생략) ② (생략)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 ---------- ---------- ---------- ---------- 1. -------- 10억 원 이상 ---------- 2. ~ 3.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